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납부연장... 최장 2년까지

국세청이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대해 최장 2년까지 납부를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이미 고지한 세금이라도 2년간 납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최장 2년까지 압류·압류재산 매각이 유예된다.

위 혜택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라도 경영상 어려운 경우 납기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 우편 송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 "7월 재산세 납부의 달"...2천600만건, 총 5조4천억원 부과·고지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달(7월) 정기본 재산세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

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내는 게 좋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편리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 소액 인출한도 300만원까지 확대

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달리 제출해야 했던 서류나, 중복·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별 상이했던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상속인 제출서류 등을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하기로 했다.

상속인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는 소액재산의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 제출 없이 상속인 중 1인 요청으로도 인출이 가능한 절차다. 그간 그 한도를 100만원으로 묶어 두고 있었는데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3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일부 회사는 간소화 요건과 한도 등이 다를 수 있기에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